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71
----------	-----

제출연월일 : 2009. 4. 2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연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3항).
- 나. 이용료 경감 대상에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과 명예시민증 소지자 및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를 추가함(안 제8조의2).
- 다.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사유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 라. 법인회원제를 신설하는 등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계량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9. 3. 27. ~ 4.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관람료의 경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3조의2에 의한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8.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제9조제2호가목 및 다목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관람료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할인한다. 다만, 관람료 3만원 이하 공연을 100명 이상이 단체 구매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공연일부터 60일 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30일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3. 관장이 정하는 연계공연을 예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당 유료회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가. 2개의 연계공연 : 100분의 20

나. 3개의 연계공연 : 100분의 30

다. 4개 이상의 연계공연 : 100분의 40

별표 1 제1호가목 양상블홀란중 “651”을 “643”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면적란중 “평”을 “m²”로, “133”을 “440”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면적란중 “평”을 “m²”로, “136”을 “450”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무대장치란중 “30평”을 “99m²”로, “10평”을 “33m²”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라. 연습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면적(m ²)	사용료	비 고
오케스트라연습실	311	200,000	·1회 4시간 기준 - 입실부터 퇴실까지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 공용설비 및 공간 - 해당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본시설 및 업라이트 피아노 - 청소, 냉·난방 등 ·10회 이상 사용시 100분의 20 할인
합창단연습실	179	120,000	
무용단연습실	245	160,000	
청소년합창단연습실	142	80,000	
리허설룸	413	260,000	
양상블홀리허설룸	278	160,000	
무용연습실A	66	40,000	
무용연습실B	73	40,000	
무용연습실C	116	80,000	
연극연습실A	208	120,000	
연극연습실B	89	60,000	
연극연습실C	76	40,000	
음악연습실A	43	20,000	
음악연습실B	43	20,000	
음악연습실C	46	20,000	
음악연습실D	36	20,000	
음악연습실E	36	20,000	
음악연습실F	36	20,000	

무료·유료 회원제(제13조의3 관련)

종 류		연회비	혜 택
무료회원		없음	·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공연정보 제공
유 료 회 원	골드	10만원	·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공연정보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20 할인(공연별 4매 이내) · 공연프로그램 무료제공 · 문화예술교육 수강료 100분의 15 할인(가입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명에 한한다)
	블루	5만원	·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10 할인(공연별 2매 이내) · 문화예술교육 수강료 100분의 10 할인(가입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명에 한한다)
	법인	100만원	·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 공연프로그램 무료제공 ·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20 할인(공연별 50매 이내)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② (생략)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사용료의 <u>100분의 10</u>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00분의 30</u>----- ----- ----- ----- -----</p>			
<p>제8조의2(이용료의 경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p> <p>2. ~ 6. (생략) <신설> <신설></p>	<p>제8조의2(관람료의 경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3조의2에 의한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p> <p>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p> <p>2. ~ 6. (현행과 같음)</p> <p>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p> <p>8. <u>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u></p>			
<p>제9조(사용료의 환불)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사용료의 <u>100분의 10</u>을 제외한 차액 환불</p> <p>나. (생략)</p> <p>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총사용료의 <u>100분의 10</u>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p>	<p>제9조(사용료의 환불)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u>100분의 30</u>----- -----</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 -----<u>100분의 30</u>-----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의2(관람료의 징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기획공연 관람료는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할인한다. 다만, 관람료 3만원 이하 공연을 100명 이상이 단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⑤ 조기예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일로부터 60일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30일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의2(관람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관람료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할인한다. 다만, 관람료 3만원 이하 공연을 100명 이상이 단체 구매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2. 공연일부터 60일 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30일 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p> <p>3. 관장이 정하는 연계공연을 예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안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당 유료회원에게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p> <p>가. 2개의 연계공연 : 100분의 20</p> <p>나. 3개의 연계공연 : 100분의 30</p> <p>다. 4개 이상의 연계공연 : 100분의 40</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사용료				[별표 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사용료					
구분	좌석 수 (석)	종류별		1회 사용시간	구분	좌석 수 (석)	종류별		1회 사용시간
		음악,연극무용, 합창 등	오페라,발레,뮤지컬 등				음악,연극무용, 합창 등	오페라,발레,뮤지컬 등	
아트홀		(생략)			아트홀		(현행과 같음)		
양상블홀	651	(생략)			양상블홀	643	(현행과 같음)		
라. 연습실 사용료 (단위 :)				라. 연습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면적(평)	사용료	비고	구분	면적(m ²)	사용료	비고		
오케스트라연습실	94	(생략)		오케스트라연습실	311	(현행과 같음)			
합창단연습실	54			합창단연습실	179				
무용단연습실	74			무용단연습실	245				
청소년합창단연습실	43			청소년합창단연습실	142				
리허설룸	125			리허설룸	413				
양상블홀리허설룸	84			양상블홀리허설룸	278				
무용연습실A	20			무용연습실A	66				
무용연습실B	22			무용연습실B	73				
무용연습실C	35			무용연습실C	116				
연극연습실A	63			연극연습실A	208				
연극연습실B	27			연극연습실B	89				
연극연습실C	23			연극연습실C	76				
음악연습실A	13			음악연습실A	43				
음악연습실B	13			음악연습실B	43				
음악연습실C	14			음악연습실C	46				
음악연습실D	11			음악연습실D	36				
음악연습실E	11			음악연습실E	36				
음악연습실F	11			음악연습실F	36				

현	행	개 정 안			
2. 기타시설 사용료 가. 컨벤션홀		2. 기타시설 사용료 가. 컨벤션홀			
면적(평)	사용목적 (좌석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비고	
133		(생략)			
나. 원형극장(야외극장)		나. 원형극장(야외극장)			
면 적(평)	수용인원(명)	사 용 료		비 고	
136	(생략)				
3. 부대설비 사용료(아트홀·양상블홀공통)		3. 부대설비 사용료(아트홀·양상블홀공통)			
구 분	아트홀·양상블홀				비고
	품 명	사용료	품 명	사용료	
무대 장치	· 덧마루(기본 30평 무료) · 추가 10평당				
	(생략)				
구 분	아트홀·양상블홀				비고
	품 명	사용료	품 명	사용료	
무대 장치	· 덧마루(기본 99㎡ 무료) · 추가 3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3] 무료·유료 회원제(제13조의3 관련)		[별표 3] 무료·유료 회원제(제13조의3 관련)	
종 류	연 회 비	혜 택	혜 택
무료회원	없 음	이-메일(E-mail)을 통하여 공연정보 제공	·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공연정보 제공
유료 회원	우대 10 만 원	이-메일(E-mail)을 통한 공연정보제공,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20 할인(공연별 4매 이내), 공연홍보물 무료제공,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100분의 10 할인	·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공연정보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20 할인(공연별 4매 이내) · 공연프로그램 무료제공 · 문화예술교육 수강료 100분의 15 할인(가입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명에 한한다)
	일반 5만 원	이-메일(E-mail)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10 할인(공연별 2매 이내),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100분의 10 할인	·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10 할인(공연별 2매 이내) · 문화예술교육 수강료 100분의 10 할인(가입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명에 한한다)
	청소년(만19세 미만) 2만 원	이-메일(E-mail)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10 할인(공연별 1매)	·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공연정보 제공 · 공연프로그램 무료제공 ·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20 할인(공연별 50매 이내)
유료 회원	블루 5만 원		
유료 회원	법인 100 만원		

심 사 보 고 서

2009년 5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4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5. 20)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

1. 제안이유

공연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이용료 경감 대상에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과 명예시민증 소지자 및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를 추가함(안 제8조의2).

다.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사유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라. 법인회원제를 신설하는 등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대관 계약금 상향조정을 통해 예약 취소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인동반자 1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를 관람료 할인 대상자로 추가하며, 패키지 공연상품 할인제 도입, 법인회원제 신설 등 회원제 운영제도의 개선과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위한 것으로

○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

예약 취소율 감소와 장애인 편의도모, 명예시민 예우강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꿈나무카드소지자가 9,290세대 등 할인대상 확대에 의한 재정부담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할인 시 꿈나무카드 소지자 할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I. 수 정 내 역 : 내용별첨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71
----------	-----

제안연월일 : 2009. 5. 20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관람료 경감대상에 명예시민 배우자와 꿈나무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소지자 관람료 경감 시 후단을 추가함.

(안 제8조의2제7호).

나.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 관람료 경감 시 후단을 추가함.

(안 제8조의2제8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안 제8조의2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의2(이용료의 경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p> <p>2.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8조의2(관람료의 경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3조의2에 의한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p> <p>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p> <p>2. ~ 6. (현행과 같음)</p> <p>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후단신설)</p> <p>8.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후단신설)</p>	<p>제8조의2(관람료의 경감)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6. (개정안과 같음)</p> <p>7. -----.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p> <p>8. -----.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p>